

목 차

■ 증권금융 칼럼 ■

- 신탁과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2

■ 주요 업무 사례 ■

- SK(주)를 대리하여 (주)LG로부터 LG실트론 주식 51%를 매수하는 거래 자문 6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하여 '주택연금 담보주택 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업무 수행 8
- (주)카카오의 콘텐츠 비즈니스 자회사 포도트리를 대리하여 글로벌 투자회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1,2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자문 9
- 일본계 소비자 금융회사 브라보캐피탈을 대리하여 메이슨캐피탈과 합작으로 미얀마 소액금융(MFI) 사업 진출 관련 자문 10
- 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인 부바(PT BUVA)를 대리하여 투자 유치 자문 11
- 키스톤 PE와 에코프라임 PE를 대리하여 동부건설 인수 자문 12
- 키움증권을 대리하여 TS저축은행 지분 인수 자문 13
-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14

■ 정책 동향 ■

-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15
-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방안 17

■ 최신 법령/규정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19

■ 최신 판례 ■

-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21

■ 단신 ■

- 최진숙 변호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7

■ 증권금융 칼럼 ■

신탁과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¹



(법무법인 지평 **성보석 변호사**)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불특정, 특정), 재산신탁(금전채권, 부동산신탁, 유가증권 등), 종합재산신탁 등이 있고, 신탁은 현재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속신탁에 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는 겸영신탁회사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전업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최근 7년간의 신탁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7월 말 기준 수탁총액은 약 708조 원으로서 2010년 말 기준 수탁총액인 약 370조 원보다 무려 338조 원이나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 2016년 신탁업 현황]

(단위: 조 원)

구분	금전신탁	재산신탁	기타	수탁총액	전년도 대비 증감
2010. 말	138.9	231.6	0.2	370.7	-
2011. 말	169.8	241.1	0	410.9	40.2
2012. 말	213	225.5	0	438.5	27.6
2013. 말	247.6	249.4	0	497	58.5
2014. 말	287.3	258.8	0	546.1	49.1
2015. 말	322.4	278.8	0.3	601.5	55.4
2016. 7. 말	373.2	335.2	0.2	708.6	107.1

¹ 본 원고는 리걸타임즈 2017년 1월호에 게재되었고, 일부 내용은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탁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탁법 전면 개정에 의한 신탁업의 활성화입니다. 신탁법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법률 제900호)된 후 무려 50년이 지난 2011년 7월 25일에서야 처음으로 전면 개정(법률 제10924호)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개정 이유였고, 신탁법 개정이 가져온 결과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 신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0년~2012년 수탁총액의 매년 증가액은 27조 원~40조 원에 불과하였는데,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3년부터의 수탁총액은 매년 49조 원~107조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탁제도의 안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담보권(근저당권, 질권 등)과 달리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신탁법 제2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독립된 재산을 구성합니다. 독립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 및 상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제25조 제1항 본문) 신탁재산은 위탁자 및 수탁자의 강제집행이나 도산의 위험 또는 상계의 위험과는 절연(絶縁)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신탁은 다른 담보제도보다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탁 중 담보신탁은 일반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서도 자주 사용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대출금융기관이 대주 겸 우선수익자, 신탁회사가 수탁자, 위탁자가 수익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과 같은 경영신탁회사가 대주로서 참여하여 우선수익자인 동시에 수탁자가 되고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이하 '본건 신탁계약')이 허용되면, 우선수익자와 수탁자가 서로 다른 담보신탁의 경우와 비교하여 금융비용(신탁보수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과연 본건 신탁계약이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는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신탁법 제36조의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원칙'과 관련됩니다. 구 신탁법(법률 제7428호) 제29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익향수금지원칙의 위반행위가 무효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 신탁법이나 현행 신탁법은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구 신탁법 하에서는, 거래의 안정성을 근거로 유효라고 보는 견해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되는 행위를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이에 관한 판례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를 다룬 판례가 있었습니다.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사업부지 및 주택에 관해 시행사 및 토지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수탁자' 겸 '단독수익자'가 된 사안인데,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115968 판결)은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원칙 위반행위는 신탁위반행위가 될 뿐이고, 신탁계약을 당연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신탁계약일은 개정 신탁법의 시행일 이전이어서 개정 신탁법이 아닌 구 신탁법 제2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신탁법 제36조도 구 신탁법 제29조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위 판례는 개정 신탁법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익향수금지원칙의 위반행위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른다면 본건 신탁계약은 이익향수금지원칙의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본건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 단서의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익향수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수익자'의 의미를 동등한 순위의 수익자로만 한정하여 좁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순위가 다른 수익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것인지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법무부는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더 있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종류와 내용, 수익권 취득시기 등이 다른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더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동수익자 중 1인만 우선수익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밖의 수익자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해화된 형식적 수익자가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봄으로써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신탁계약처럼 수탁자가 단독 1순위 우선수익자이고 위탁자가 수익자인 경우 위탁자를 '형해화된 형식적 수익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금융당국의 공식 의견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형해화된 형식적 수익자의 해석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건 신탁계약이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의 불건전 영업행위(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동일하여 금융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목(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여 불건전 영업행위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의견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동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겸영신탁회사가 수탁자 겸 단독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고 위탁자가 수익자인 신탁계약이 허용되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해화된 형식적 수익자에 관한 해석,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불건전 영업행위 및 예외의 해석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견이나 판례가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위 문제 뿐만 아니라 이익향수금지원칙 및 예외에 관한 다양한 사례, 학설 및 판례들이 축적되어 신탁이 보다 많은 금융거래에서 이용되어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주요 업무 사례 ■

SK(주)를 대리하여 (주)LG로부터 LG실트론 주식 51%를 매수하는 거래 자문

지평은 SK(주)를 대리하여 (주)LG로부터 LG실트론 주식 51%를 매수하는 거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단독/레이더M] SK-LG그룹 '반도체 빅딜'(2017. 1. 23.)
- 조선일보 - SK-LG의 '반도체 빅딜'(2017. 1. 24.)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이승수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박종완 변호사



고기승 변호사



곽은비 변호사



고효정 변호사



이상희 외국변호사



손영 외국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이공형 전문위원

■ 주요 업무 사례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하여 '주택연금 담보주택 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업무 수행

지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하여 '주택연금 담보주택 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보고서는 현행 주택노후연금제도 하에서 근저당권 경매실행절차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동산 담보신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과 신탁, 유류분 제도의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강원일 변호사



마상미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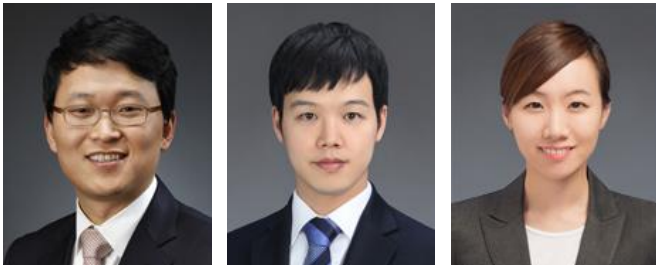
(주)카카오의 콘텐츠 비즈니스 자회사 포도트리를 대리하여 글로벌 투자회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1,2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자문

지평은 (주)카카오의 콘텐츠 비즈니스 자회사 포도트리를 대리하여 글로벌 투자회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1,2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카카오 자회사 포도트리, 1250억 규모 해외 투자 유치(2016. 12. 5.)
- 조선일보 - 카카오 자회사 '포도트리' 1250억 투자 유치(2016. 12. 6.)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곽은비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일본계 소비자 금융회사 브라보캐피탈을 대리하여 메이슨캐피탈과 합작으로 미얀마 소액금융(MFI) 사업 진출 관련 자문

지평은 일본계 소비자 금융회사 브라보캐피탈을 대리하여 메이슨캐피탈과 합작으로 미얀마 소액금융(MFI) 사업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헤럴드경제 - 메이슨캐피탈, 미얀마 소액금융 진출...경험 많은 다과 합작\(2016. 11. 17.\)](#)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오규창 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인 부바(PT BUVA)를 대리하여 투자 유치 자문

지평은 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인 부바 (PT Bukit Uluwatu Villa Tbk, 'PT BUVA')를 대리하여 250억 원의 투자 유치 관련 주식매매 및 신주 인수 계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더벨 - 대명-도미누스인베스트, 인니 리조트에 250억원 투자\(2016. 10. 28.\)](#)

[담당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키스톤 PE와 에코프라임 PE를 대리하여 동부건설 인수 자문

지평은 키스톤 PE와 에코프라임 PE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설립한 PEF 3개사를 대리하여 2,000억 원 규모의 동부건설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조선비즈 - 동부건설, 키스톤에코프라임으로 최대주주 변경\(2016. 10. 5.\)](#)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안중성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키움증권을 대리하여 TS저축은행 지분 인수 자문

지평은 키움증권을 대리하여 TS저축은행 지분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키움증권, 885억원에 TS저축은행 인수\(2016. 7. 20.\)](#)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지평은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이은영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

■ 정책 동향 ■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3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P2P 대출시장이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핀테크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에 따르면, 투자한도는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일반 개인 투자자,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 등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투자금의 보관·예탁은 P2P업체가 아니라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담당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P2P업체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차입자의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확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P2P업체는 차입자에게 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하고, 상환방식, 연체이자 및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P2P업체는 투자자의 업체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P2P업체 자체에 대한 정보(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플랫폼에 공시해야 합니다. 한편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영업행위 규제).

추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하되, 기존 P2P업체들에게는 사업정비 (고객자산 분리 및 예치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수정 등)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다운로드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 정책 동향 ■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방안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15일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및 전가금융업자 등 5개 업권 176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총 480개의 약관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156개사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대상이 되었던 약관조항 유형으로는 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령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소비자가 접근 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통지시점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부과하는 조항, 금융회사의 본점·영업점 소재지 법원만을 합의관할로 명시하는 조항 등), ② 금융회사의 면책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경우(가령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현행 법령이 정하는 면책사유 이외의 사유를 명시하는 조항 등), ③ 약관이 현행 법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령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조항이 폐지되었는데도 공인인증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등)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현행 법령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핀테크 활성화와 더불어 전자금융업 등록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규모 및 사업형태가 다양하고 약관 제·개정 시 참고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제공하고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

는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자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을 2017년 1/4분기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보도자료

■ 최신 법령/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심희정 변호사 | 이은영 변호사

1. 개요

2016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등은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술평가 상장특례를 확대하고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적자 기업이더라도 일정한 성장성이 인정된다면 코스닥 상장을 인정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기술평가 상장특례 확대

기존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에 따르더라도 적자 상태의 기업도 전문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등급을 받은 경우 상장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업종의 경우가 많았고 기술평가 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바이오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기술평가가 없더라도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특례 상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주관사 추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나. 이익미실현기업 진입요건 신설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 시총 500억 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 원 이상 그리고 직전 2사업 연도 평가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이거나, (ii) 시총 500억 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SPAC, 대형법인, 외국기업 진입요건 등 정비

SPAC 합병 상장 시 합병대상법인 진입요건을 확대하여 기존 ROE, 당기순이익 요건 이외에 매출액 50억 원 이상, 매출액증가율 20% 이상인 요건을 추가하였고, 대형법인 대상을 외국기업까지 확대하고 우량대형법인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였습니다. 한편, 외국기업 상장 시 상장주선인, 최대주주, 회계법인 책임은 강화하였는데, 상장주선인의 경우 보호예수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최대주주의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회계법인도 청구 후 상장일까지 분기보고서 제출시한 도래 시 분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의 개편 방안」 보도자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이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최신 판례 ■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91474 판결]

배성진 변호사 | 배기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A회사와 보험사인 피고는 2007년 3월 21일 A회사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회사, A회사의 임원을 피보험자, 보험금 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은 5차례에 걸쳐 1년마다 갱신됨. 원고는 A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 내용 중 배상청구에 대한 통지의무 및 방어비용에 관한 서면 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1조]

피보험자들은 이 증권에 규정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부당행위에 기인하여 그들에게 제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피보험자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하거나, 방어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서면동의를 불합리하게 보류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어떠한 손해배상금 지급, 방어비용, 의무의 인수 또는 승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다. A회사는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에 자금을 지원했고, 검찰은 A회사가 위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7년 12월 11일 자금 지원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함. 원고에 대한 총 약 1,683억 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1,447억 원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고, 약 236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됨.
- 라. 원고는 위 형사소송의 방어를 위해 639,000,000원을 지출했고, A회사를 통해 피고에게 위 방어비용 지출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 마. 원심은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제기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임에도 피고가 A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통지의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약관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원고는 자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 원고 청구 인용.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배상청구 제기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 여부

“이 사건 약관 제11조에는 ‘피보험자는 이 증권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부당행위에 기인하여 그들에게 제기된 모든 배상청구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어떠한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위 약관 제11조, 제12조는 상법 제657조, 제720조 제1항과 다르게 보험금 청구의 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내용이므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②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위 약관 제11조, 제12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약관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약관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이전행위 면책 특별약관(Prior Acts Exclusions) 관련 판단

"원심은,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피해자 A회사의 손해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이는 2002. 3. 20.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부당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전행위 면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 중 이전행위 면책 특별약관에는 '관련 손해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2. 3. 20. 이전에 그 전체 또는 일부가 행해진 부당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위 특별약관에서의 '손해'는 약관 제2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와 동일하게 '피보험개인이 지급하게 된 방어비용을 포함한 손해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약관 문언에 부합하고, 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그 보상책임을 규모가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 피보험자인 임원이 지급하게 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보상책임을 범위에 포함되는 시간적 범위도 보상책임과 직접 관련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소멸시효 관련 판단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어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만,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방어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그 방어비용이 보험자에게 보상책임 있는 보험사고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참조). 그런데 유독 방어비용에 관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방어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면, 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 보수의 지출시기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방어비용을 보험목적에 포함시키고 그 선급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상법 제72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방어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그때부터 진행된다.”

3. 판결의 의의 및 한계

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청구 제기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의 효과 인정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policy)을 택하고 있습니다. 배상청구기준을 택하고 있는 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피보험자에게 청구된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는지가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보험금 청구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1조도 배상청구 통지가 보험금 청구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 제기 사실에 관한 통지가 보험금 청구의 조건이 된다고 전제하고 통지의무에 관해서는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자가 배상청구 제기 사실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청구 제기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는 일반 기업의 보험계약 체결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 이전 행위 면책약관의 손해의 의미 및 발생시기에 관한 약관 해석 명확화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 시 이전 행위 면책 특별약관에 구체적인 시기 및 금액에 따라 면책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면책약관에 규정된 '손해'의 의미가 방어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그 발생시기를 방어비용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실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① 이전 행위 면책 특별약관의 '손해'에 '피보험개인이 지급하게 된 방어비용을 포함한 손해액'도 포함되고, ② 보상책임을 결정하는 시간적 범위도 보상책임과 직접 관련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전 행위 면책약관의 '손해'의 의미 및 발생시기에 관한 약관의 해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 방어비용의 소멸시효 기산시점에 관한 기준 제시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은 통상 배상청구가 제기된 시점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어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어느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방어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그 방어비용이 보험자에게 보상책임 있는 보험사고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방어비용의 소멸시효 기산점에도 기존 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 단신 ■

최진숙 변호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최진숙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는 지난 1월 1일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